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부터 보도가능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이 윤 수(02-2100-2601)	담 당 자	윤 송 이 사무관 (02-2100-2517)	
	금감원 기업공시국장 김 영 진(02-3145-8100)		윤 덕 진 팀장 (02-3145-8094)	

제 목 :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. 7. 18. 제14차 정례회의에서
 -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선바이오(주)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
-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

< 붙임 > 위반자별 위법사실
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54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-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 - 전화 : 1332 또는 02-3145-5583, 5599, 5568, 5593
 - 팩스 : 02-3145-5544

<붙임>

위반자별 위법사실

위반자	위반내용	조치
선바이오(주)	-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6,000,000원

- 선바이오(주)는 2016. 8. 12.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(15년말) 연결기준 자산총액 79.3억원의 14.1%에 해당하는 11.2억원의 기계구입 등을 결의 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. 8. 16.을 경과하여 2018. 1. 2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